

한국모태펀드

2019년 농수산벤처분야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9년도 한국모태펀드 농수산벤처분야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200억원 이내 (혁신모험 200억원)
기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에 대한 투자 ·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경영체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19년 4월 12일(금), 14:00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형태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출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지원하는 운용사는 본 출자사업과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모두 선정되어야 함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혁신 모험	농수산벤처	수산일반 ^{주1)}	105	300	35%	○
			70	200		
		수산벤처창업 ^{주2)}	25	100	25%	○
합 계			200 이내	600 이상		

주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형태로만 지원 가능, 상기 표 예산에 따라서 2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 단, 이 경우 운용사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서 모태펀드와 동일한 금액을 출자할 계획

주2) 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로만 지원 가능, 1개 운용사 선정 예정.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서 55억원을 출자할 계획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혁신 모험	농수산벤처	수산 일반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또는 수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양산업자 및 수산 관련 R&D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산경영체')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또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금지
		수산벤처 창업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중 수산업, 수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 또는 수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원양산업자 및 수산 관련 R&D에 종사하는 자(이하 '수산경영체')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또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 준비단계 또는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②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확인한 수산분야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수산분야 창업아이템을 활용하는 기업 ④ 수산 관련 공공·민간의 연구개발 성과 또는 정부·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사업화·활용하는 기업 ⑤ 수산물·수산업과 관련된 ICT 등 융복합 기술을 사업화·활용하는 기업 ⑥ 수산분야 청년기업(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 ○ 본 조합은 의무투자비율 충족 후에도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처에만 투자할 수 있음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일정 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확정)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보다 5% 이상 낮게 제안하는 경우(출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지역 금융 기관 등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출자 참여규모에 따라 차등우대)
- 본점 또는 지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연구소 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제안사가 운용 중인 최근 5년('14~'18)간 결성한 펀드의 투자금액 중 창업 초기기업 투자비율이 일정 이상일 때, 단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주목적이거나 영화·문화 투자가 주목적인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가 운용 중 펀드에서 최근 5년('14~'18)간 선도투자^① 이후 후속투자^②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벤처펀드를 통해 신주(CB, BW 등 포함) 방식으로 최초 투자 (복수 운용사 투자 시 타 운용사의 최초 투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투자까지 인정)

*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② 신주(CB, BW 등 포함) 방식으로 투자하되 선도투자자와 동일 라운드 투자는 인정하지 않음

- 수산분야 투자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있는 경우
-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법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 수산벤처, 수산 신기술 등에 대한 투자이력·계획 인정 시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Σ(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2,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업무정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 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III.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자조합의 투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 상 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속기간 5년 이상, 10년 이내(8년 원칙), 2년 이내 연장 가능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모험계정 농수산벤처 분야(수산일반펀드) : 3%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가능, 단 6차 산업화기업, 유망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할 경우 기준수익률을 2%로 하향 조정(각 항목에 대한 정의는 추가인센티브 및 기타 부분 참조) ○ 혁신모험계정 농수산벤처 분야(수산벤처창업펀드) : 0%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항 목	내 용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신주 보통주 투자 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 \left[\left(10\% \times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right), 0 \right]$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 및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용 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의무투자비율) 조합 등록 후 3년이 지난 그 다음날까지 약정총액의 100분의 60을 수산분야 수산경영체에 투자 ○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기준수익률 관련 용어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산업화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어업경영체(1차)가 주체가 되어 2차 또는 3차 산업을 접목하는 산업 ②어업경영체(1차)가 아닌 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 어업경영체(1차)의 판로확대·생산증대, 새로운 품목생산 등을 통해 어업경영체(1차)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산업 또는 어업경영체(1차)의 생산, 유통시설 강화에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청년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이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이 50% 이상인 수산경영체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9. 4. 12.(금)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9. 5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9. 8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및 USB 메모리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9. 4. 2.(화) 15: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16 VR빌딩 지하1층 회의실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주차공간 미제공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9. 4. 12.(금)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9. 4. 11.(목) 12: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일 정오까지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 및 USB메모리는 4월 11일 18:00까지 우편, 퀵 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가. 혁신모험 계정 : 02-2156-2060, fof@k-vic.co.kr

나.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9. 3. 27.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최대주주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회사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조합운용실적	조합 수익성에 대한 평가
	투자실적	투자소진을 평가(조합 및 핵심인력 기준)
	준법성	최근 3개년 관련 법규 등 위반내용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경력,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중도이직 및 근속,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자 이외의 운용사, 신설 및 소형(운용 중인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억 원 미만) 창투자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